

예산총칙

2022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731,022,584	81,930,678
일반회계	2,494,972,655	74,849,180
특별회계	236,049,929	7,081,498
공기업특별회계	192,601,321	5,778,04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1,797,166	2,753,91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0,804,155	3,024,125
기타특별회계	43,448,608	1,303,458
주택사업특별회계	98,000	2,94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509,258	405,278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2,116,024	63,481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079,904	92,397
교통사업특별회계	22,349,568	670,487
대지보상특별회계	7,963	239
수질개선특별회계	2,210,875	66,32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7,016	2,310

제 2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4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5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7,070,320천원』 으로 한다.

제 7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액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 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